변경 대비표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시행 예정일: 2024.05.31

■ 개정 약관명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특약

■ 기존손님 적용여부: 적용

■ 개정대비표

	개정전	개정(안)	비그	 ם
제12조 예금자보호		제12조 예금자보호		
1	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	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		
	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	문구 수정	
2	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	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		
	은 <u>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</u>	금은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</u>	문구 수정	
	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	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		
	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	<u>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/u>		
	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			
	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			
	<부 칙>	<부 칙>		
<신설	널>	본 특약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	시행일자 격	투가

[※]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내용이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